

의안번호	제557호
의결 연월일	2013년 월 일 (제325회)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광진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3년 10월 31일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7
----------	-----

발의연월일 : 2013년 10월 31일
발의자 : 이광진, 김종필, 강현삼,
김영주, 김재중, 박문희,
임헌경 의원

1. 개정이유

충청북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산하단체, 도에서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의 장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내 중소기업 보호 및 양질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7. 관련부서 협의 : 균형건설국 도로과와 협의
8.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13. 9. 26. ~ 10. 16.)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도모하고, 도지사는”을 “도모하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도지사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제4항 중 “균형개발과장”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협의회”를 “심사위원회 및 협의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함으로써</u>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규정</u> <u>하여</u> ----- -----.</p>
<p>제3조(도의 책무) ①·② (생략)</p> <p>③ 도지사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u>도모하고</u>, 도지사는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시상할 수 있다.</p> <p>④·⑤ (생략)</p>	<p>제3조(도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도모</u> <u>하고</u>,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6조(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p>

건설산업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회의) ① ~ ③ (생략)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균형개발과장이 된다.

⑤ (생략)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수당 등) 심사위원회 및 협의회 -----

-----.

관 계 법 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7>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 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2.7.4>
-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4>

제6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